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수리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태안군, 예산군

내 용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 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같은 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하 ‘식품첨가물공전’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같은 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제품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이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연도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품목제조 보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식품첨가물공전 Ⅱ. 제4.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르면 ‘글루콘산아연’은 음료류, 시리얼류, 조제유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염화크롬’은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

며

‘금박’은 착색료의 용도로서 주류, 잼류, 과자류·빵 또는 떡류·초콜릿류·아이스크림류(외부코팅에 한다)에만 사용이 가능 하며, ‘카라멜색소’는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안식향산나트륨’은 액상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품목제조 보고를 받은 각 등록관청에서는 식품첨가물인 ‘글루콘산아연’, ‘염화크롬’, ‘금박’, ‘카라멜색소’, ‘안식향산나트륨’이 사용된 식품의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주시(○○과), 천안시(○○과), 아산시(○○과), 태안군(○○○○과), 예산군(○○○○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회사 등 5개 업소가 식품첨가물인 ‘글루콘산아연’, ‘염화크롬’, ‘금박’, ‘카라멜색소’,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제조한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환’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수리 내역

관할 기관	업체명	품목명	품목유형	보고일자	원재료명(비율포함)	감사확인
공주시	○○○○ 회사	○○○○○	기타가공품	2017.6.8	인삼분말(12.2), ~~~, 단호박분말(7.9), 금박(0.1) , 벌꿀(12.2)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확인”
		○○○	기타가공품	2017.6.8	인삼분말(5), 석류분말(1), 오미자분말(1), 금박(0.01) , 산마분말(2), ~~~, 마카뿌리(1), 칩뿌리분말(7), 솔잎분말(7)	
천안시	○○○○○○○○ ○○○○○○○○ (주)	○○○ ○○○○○	기타가공품	2016.9.21	실크펩타이드(53.415), ~~~, 글루콘산아연(0.01) , 염화크롬(0.5) , ~~~	* 감사기간 중 품목제조보고 변경 및 중단 조치
아산시	○○○○(주) ○○○○○	○○○○○	액상차	2016.1.14	홍삼엑기스(0.06), 카라멜색소비에이(0.04) , 안식향산나트륨(0.05) , ~~~	

